##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7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최혜영·강선우·홍정민

고영인 • 박성준 • 김경만

윤미향 • 아주진비) • 김용민

서영석 · 김성주 · 오영환

임호선 · 김남국 · 최종윤

이은주 • 이용우 • 이재정

박영순 · 김상희 의원

(20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 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 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5 신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실시하는 정신건강관리에 드는 경비
- 10의3. 제70조의5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정신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 제65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신건강관리 에 드는 경비
  - 8의3. 제70조의5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 이 정신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 제67조에 제9호의4 및 제9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4.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정신건강관리에 드는 경비
  - 9의5. 제7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정신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7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5(정신건강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정신건강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 강관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관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
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가 부담할 경비)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구가 부담한다.	<u></u>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0의2.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시하
	는 정신건강관리에 드는
	<u>경비</u>
<u> &lt;신 설&gt;</u>	10의3. 제70조의5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탁하
	여 관계 전문기관이 정신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2.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u>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u>

<신 설>

9. (생략)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 9의3.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략) <신 설>

신건강관리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5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위탁하여 관 계 전문기관이 정신건강관 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경 刊

9. (현행과 같음)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리에 드는 경비

9의5. 제7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 기관이 정신건강관리를 실 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현행과 같음)

제70조의5(정신건강관리) ①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 · 의료 업자 · 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 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 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정 신건강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 신건강관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 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관리 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